

화성시 쾌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화성시 고시 제2024-988호(2024.12.11.)로 화성시 정남면 쾌락리 26-14번지 일원의 「화성 쾌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0 .

아주산업주식회사 대표 문승만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위 치	지 번(화성시)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명칭 : 화성 쾌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쾌락리 26-14번지 일원	정남면 쾌락리	26-19, 26-27, 26-30, 25-1, 25-2, 26, 26-15, 26-43, 26-20, 1153, 1149-1, 산60-45, 26-14
		안녕동	112-106, 106-20, 112-103,

2.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2025. 03월경(추후 개별통보 예정)
-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 후 개별통지(다만, 관할 시·도지사 및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 보상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①협의 성립(계약체결시) → 소유권이전 →보상금 지급
②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별도로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업 시행자 : 아주산업 주식회사 대표 문승만

4. 사업 기간 : 2024. 12. 11. ~ 2025. 12. 31.

5.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5. 01. 20. (월) ~ 2025. 02. 10. (월) (22일간)
- 장 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관 (T:031-5189-2467)

보상사업소 : 경기도 평택시 세교6로 12-22 101호 T:010-7134-4098, F:031)647-3776

6. 열람 공고 : 토지 및 물건조서 등 열람 (따로 붙임)

7. 기타 사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